

[번역]

2007년 6월 30일

김영학  
기간제조산업본부장  
산업자원부  
대한민국 과천

김영학 본부장 귀하,

금일 서명되는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의 제4장(섬유 및 의류)에 관한 협상과정에서,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생산자에게 이 협정의 섬유 및 의류 상품을 위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함에 있어 보다 큰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정 면 시트 직물, 인조 섬유원료 니트 직물, 폴리에스터와 다른 합성 필라멘트 직물, 그리고 모직물을 이 협정의 부록 4-나-1(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·원사 및 원단)의 미합중국의 목록에 추가하는 것에 강한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.

본인은 이 협정의 발효 후에 귀 정부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실체로부터 그 직물을 자세히 기술하는 요청을 접수하는 경우, 미합중국은 이 협정의 부속서 4-나(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·원사 및 원단)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그 요청을 검토할 것임을 확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. 그러한 절차에 따라, 미합중국은 불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추가로 30 영업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는 한, 요청의 접수로부터 30 영업일 이내에 그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.

본인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귀하 및 귀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  
할 것을 고대합니다.

/서 명/

스캇 퀴젠베리

섬유특별교섭관